DEVSISTERS

윤리행동지침

서 문

주식회사 데브시스터즈 및 그 계열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경영활동 또는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회사는 회사 및 임직원이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행동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본 윤리행동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회사 및 임직원은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본 윤리행동지침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윤리행동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데브시스터즈 및 그 계열사(이하 '회사'라고 합니다)에 속한 임직원 (이하 "임직원"이라고 한다)에게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적용범위]

본 지침은 회사에 속한 임직원 모두에게 적용되며, 회사의 파트너사에게도 본 지침을 이해시키고 실천할 것을 권장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1. 임직원

데브시스터즈 및 그 계열사에 재직중인 모든 임직원을 말합니다.

2. 이해관계자

회사의 의사결정으로 인해 권익에 영향을 받는 모든 당사자를 의미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소비자, 종업원, 지역사회, 언론, 시민단체, 파트너사 등이 포함됩니다.

3.금품

금전(현금, 상품권, 복권 등), 물품 등 경제적인 가치를 지닌 것을 뜻합니다.

4. 파트너사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회사와의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 또는 개인을 뜻합니다.

제 2장 임직원의 자세

제4조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 1. 회사와 임직원은 상호 신뢰와 인격 존중을 바탕으로 건전한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2. 임직원은 동료의 전문성을 인정하며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타인에게 불쾌감이나 모멸감을 줄 수 있는 일체의 행동을 하거나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제5조 [공정하고 성실한 업무수행]

- 1. 모든 업무는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회사는 모든 임직원에게 업무에 대한 공정한 기회와 평가를 제공합니다.
- 2. 임직원은 업무수행에 있어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인식하고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6조 [품위유지의무]

- 1. 임직원은 회사를 대표하는 개인으로서 언행에 책임질 수 있어야 하며, 사회 일원으로서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합니다.
- 2. 임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회사의 명예와 사회적 평가를 실추, 훼손시켜서는 안됩니다.

제7조[회사의 정보보호]

임직원은 회사의 정보와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관리하며 관련 법령과 회사의 보안규정을 준수합니다. 이 의무는 회사를 퇴직한 이후에도 존속하며, 다음 각호의 행위들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 1) 권한 없는 정보에 접근하는 행위
- 2) 업무상 취득한 회사의 정보를 회사 내부의 권한 없는 사람에게 유출하는 행위
- 3) 회사의 내부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
- 4) 내부자 정보를 이용하여 자사주를 거래하는 행위

제 2장 임직원의 자세

제8조 [자기 혁신의 자세]

임직원은 스스로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끊임없는 자기 혁신과 자기 개발을 추구합니다.

윤리행동지침

제9조 [이해상충의 금지]

- 1. 이해상충이란 임직원 본인의 동기와 행동이 회사의 최우선 이익에 부합하는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을 뜻합니다.
- 2.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유로 회사의 이익과 상충되는 활동이나 관계를 형성해서는 안됩니다.
 - 1) 본인 또는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 관련된 경우
 - 2) 회사 정보를 이용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본인 또는 제 3자의 고용, 취업 추천 등을 보장하는 행위
 - 3) 회사의 자산이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
 - 4) 회사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의 이익에 부당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

제10조 [금품 및 향응]

- 1.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거나 수수하여서는 안됩니다. 만약 불가피하고 의도치 않게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였다면, 즉시 반납하고 조직장에게 보고합니다.
- 2. 회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거나 수수한 임직원을 인지하는 즉시 그 임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금품 및 향응을 수수, 제공한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관계를 중단합니다.
- 3.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금품 및 향응, 접대 수수가 인정됩니다.
 - 1)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등
 - 2)업무와 관련된 공식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교통, 숙박, 통신, 식사 등
 - 3)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되는 기념품 또는 홍보물 등
 - 4)질병, 재난 등으로 인해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5)원활한 업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식사·경조사비·선물 등
 - 6)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7)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 8)그 밖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제 3장 고객에 대한 책임

제11조 [고객가치 제고]

- 1. 회사와 임직원은 회사가 지속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콘텐츠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고객가치 제고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 2. 회사와 임직원은 고객의 기대치를 최대한 반영하여, 고객을 위한 뛰어난 품질과 유익한 이용환경을 조성합니다.

제12조 [고객중심 경영]

- 1. 회사는 고객의 행복한 경험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2. 회사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노력합니다.
- 3. 회사는 고객과의 약속을 중시하며 고객의 합리적인 선택과 만족 실현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합니다. 회사는 지속적인 가치 창출과 신선하고 혁신적인 컨텐츠를 위해 고객의 제안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제13조 [고객정보 보호]

- 1. 회사와 임직원은 고객 및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2. 회사와 임직원은 거짓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를 조작하는 부당한 행위를 절대 삼가고, 법령이나 고객의 의사에 반하여 고객 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 3. 회사는 고객정보 보호 원칙과 법령을 준수하고,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임직원에게도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해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고 교육합니다.
- 4. 회사는 최상의 보안 시스템 및 전문 고객정보관리자 운영 시스템을 도입해 고객 정보 보호와 보안 프로세스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개선합니다.

제4장 구성원에 대한 책임

제14조 [인간 중심의 경영]

- 1. 회사와 임직원은 차별을 지양하고 조직의 다양성을 지향하며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합니다.
- 2. 회사는 임직원의 역량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우하고 최적의 업무 환경을 조성합니다.
- 3. 회사는 임직원에 대한 존중과 포용을 통해 조직 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며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 4. 회사는 임직원의 자기개발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자아실현 기회를 제공합니다.

제15조 [임직원의 안전과 행복]

- 1. 회사는 모든 임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복지제도 및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관련 국제기준, 내부제도와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임직원의 안전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합니다.
- 2. 회사는 임직원이 상호신뢰와 자긍심을 갖고 도전정신과 창의성을 발현하여 동료와 더불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 3. 임직원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우발적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에 관한 법령과 규칙을 준수하며, 동료에게 산업안전에 관한 법령 및 규칙 위반을 강요하거나 동료의 위반행위를 방조하지 않습니다.

제 5장 주주에 대한 책임

제16조 [경영정보 제공]

- 1. 회사는 주주와 투자자, 그리고 대중의 상호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영정보와 경영성과를 적시에 제공하고 공개합니다.
- 2. 회사는 회계원칙에 상응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준수하며, 회계 기준에 맞게 자료를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제17조 [주주의 권리, 존중]

- 1. 회사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모든 주주를 공정하게 대우합니다.
- 2. 회사는 주주의 이익실현을 위해 주주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하고 의사 결정에 반영합니다.

제18조 [기업가치 창출]

회사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을 기반으로 끊임없는 혁신을 도모하고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며, 주주들에게 이에 맞는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제^{6장} 공정 경쟁과 파트너사와의 관계

제19조[공정 경쟁의 추구]

회사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며 부당공동행위 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장하거나 시행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이를 위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임직원을 교육합니다.

제21조 [파트너사의 영업비밀 보호]

- 1. 회사와 임직원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사업목적에 적합한 파트너사를 선정하고 거래합니다.
- 2. 회사와 임직원은 파트너사를 '고객을 위한 최고의 경험'이라는 공동가치를 추구하는 전략적 동반자로 인식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상호이익과 공동발전을 추구합니다.
- 3. 회사와 파트너사의 모든 거래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회사와 임직원은 거래관계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파트너사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제20조 [파트너사와의 상생경영]

- 1. 회사와 임직원은 파트너사의 영업비밀을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하지 않습니다.
- 2. 회사와 임직원은 파트너사는 물론 타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않습니다.
- 3. 회사는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임직원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영업비밀 서약서를 징구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합니다.

제 7장 사회에 대한 책임

제22조 [법규 준수]

회사는 국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해당 지역에서의 관습 및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합니다.

제23조 [사회 발전 기여]

- 1. 회사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국가 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합니다.
- 2. 사회적 가치가 회사의 이익과 상충될 때, 사회적 가치를 먼저 고려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합니다.
- 3. 회사는 제품 및 서비스의 지속적인 혁신과 사업의 다각화를 통해 인류의 행복에 기여합니다.
- 4. 회사는 지역 사회의 문화를 존중하고 차별을 지양하며, 다양한 지역 사회 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합니다.
- 5. 사회구성원으로서 임직원의 사회봉사 활동 참여를 위해 제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제24조 [환경 보호]

회사는 환경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환경 친화적 경영을 통해 환경생태계를 보호합니다.

제25조 [정치적 중립성 유지]

- 1. 회사는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존중하나 회사의 동의 없이 회사를 대표하여 이루어지는 개인의 모든 정치적 의사표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2. 임직원은 회사와 무관한 개인의 정치적 의사표현임에도 불구하고 대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마치 회사를 대표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않습니다.

제26조 [사회적 가치 중립성 유지]

회사는 매사에 사회적 가치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정한 사회적 성향을 가진 단체에 편향되어 회사의 사회적 가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제8장 윤리위반행위의 신고 및 제보자 보호

제27조[윤리위반행위의 신고 및 제보자보호]

- 1. 회사는 윤리규정의 관리를 포함하여 회사의 윤리경영 담당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두고, 회사의 경영활동이나 영업활동에서 법령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감시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합니다.
- 2. 회사는 임직원의 윤리인식 제고와 윤리위반행위 신고를 장려하기 위하여 윤리의 날을 제정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며 임직원으로부터
- 3. 윤리준수 서약서를 징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 4. 회사는 회사 또는 임직원의 윤리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 채널을 운영합니다.
- 5. 회사는 핫라인 채널에 윤리위반행위가 신고되면 이를 인지하는 즉시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 1) 윤리담당부서는 추가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조사원을 선정합니다. 조사원은 수인이 될 수 있습니다.
 - 2) 신고인의 신분과 신고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며 신고인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필요시 신고인의 부서이동, 유급휴가의 부여, 행위자와의 분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3) 조사원은 신고인과 관련자들을 면담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합니다.
 - 4) 사실관계 조사 후 부정행위가 밝혀지면 행위자를 부정행위에 합당한 수준으로 징계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행위자 및 임직원에 대하여 상담 또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합니다.
 - 5) 윤리담당부서는 신고내역 및 처리결과를 접수일자 순으로 기록하여 보관합니다.

부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DEVSISTERS

©2022. Devsisters.All rights reserved.